

라이나생명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현황

이 자료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"(수시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.

[소규모펀드 현황] 2023년 4월말 기준

펀드명	설정일	설정원본	사유
주식형	2008/09/22	3,771,220,962	
인덱스	2008/09/22	2,407,507,594	
애그리비즈니스	2007/07/25	2,184,882,474	
글로벌이머징형	2008/02/29	2,132,979,796	
미국주식형	2013/12/17	2,077,184,459	
아시아50	2007/07/25	1,943,573,466	
혼합안정형	2004/10/12	1,867,206,511	
밸류고배당주식형	2013/11/04	1,529,495,070	
유럽주식형	2007/07/25	1,320,842,282	
이머징커머더티형	2008/10/09	871,803,538	
코스피원자재형	2011/08/22	545,064,488	
삼성그룹주형	2011/08/01	526,909,544	
해외혼합형	2005/06/17	407,444,875	
코스피항셍형	2011/08/24	280,154,500	
브이캡그로스형	2009/09/24	213,833,712	
기후변화주식형	2008/10/09	85,013,505	
동남아시아형	2011/11/15	42,703,754	
해외혼합시니어론형	2013/12/06	24,887,964	
			1개월 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 미만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근거규정]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

소규모 공시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입니다.

라이나생명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현황

이 자료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(수시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.

[소규모펀드 현황] 2023년 3월말 기준

펀드명	설정일	설정원본	사유
주식형	2008/09/22	3,913,747,760	
인덱스	2008/09/22	2,486,589,793	
애그리비즈니스	2007/07/25	2,159,452,480	
글로벌이머징형	2008/02/29	2,151,028,274	
미국주식형	2013/12/17	2,094,649,975	
아시아50	2007/07/25	1,938,243,122	
혼합안정형	2004/10/12	1,874,325,685	
밸류고배당주식형	2013/11/04	1,520,629,464	
유럽주식형	2007/07/25	1,272,409,868	
이머징커머더티형	2008/10/09	734,604,623	
코스피원자재형	2011/08/22	539,472,650	
삼성그룹주형	2011/08/01	524,370,257	
해외혼합형	2005/06/17	401,174,753	
코스피항셍형	2011/08/24	279,130,139	
브이캡그로스형	2009/09/24	215,016,479	
기후변화주식형	2008/10/09	84,988,980	
동남아시아형	2011/11/15	42,425,811	
해외혼합시니어론형	2013/12/06	24,337,095	
			1개월 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 미만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근거규정]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

소규모 공시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입니다.

라이나생명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현황

이 자료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(수시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.

[소규모펀드 현황] 2023년 2월말 기준

펀드명	설정일	설정원본	사유
차이나주식형	2008/02/29	4,982,428,286	
주식형	2008/09/22	3,986,814,604	
인덱스	2008/09/22	2,513,659,528	
글로벌이머징형	2008/02/29	2,142,302,460	
미국주식형	2013/12/17	2,069,662,595	
애그리비즈니스	2007/07/25	2,047,224,521	
아시아50	2007/07/25	1,941,416,810	
혼합안정형	2004/10/12	1,871,385,995	
밸류고배당주식형	2013/11/04	1,816,016,673	
유럽주식형	2007/07/25	1,649,184,077	
이머징커머더티형	2008/10/09	851,289,150	
코스피원자재형	2011/08/22	593,180,402	
삼성그룹주형	2011/08/01	528,491,906	
해외혼합형	2005/06/17	403,740,773	
코스피항셍형	2011/08/24	277,202,419	
브이캡그로스형	2009/09/24	245,171,014	
기후변화주식형	2008/10/09	57,690,039	
동남아시아형	2011/11/15	42,122,788	
해외혼합시니어론형	2013/12/06	23,566,426	

1개월 간 계속하여
설정원본이 50억 미만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근거규정]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

소규모 공시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입니다.

라이나생명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현황

이 자료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"(수시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.

[소규모펀드 현황] 2023년 1월말 기준

펀드명	설정일	설정원본	사유
주식형	2008/09/22	3,992,215,275	
인덱스	2008/09/22	2,556,268,905	
글로벌이머징형	2008/02/29	2,147,410,874	
애그리비즈니스	2007/07/25	2,068,686,037	
미국주식형	2013/12/17	2,039,630,176	
아시아50	2007/07/25	1,943,899,460	
혼합안정형	2004/10/12	1,903,577,861	
밸류고배당주식형	2013/11/04	1,802,102,369	
유럽주식형	2007/07/25	1,505,915,213	
이머징커머디티형	2008/10/09	870,557,604	
코스피원자재형	2011/08/22	593,236,180	
삼성그룹주형	2011/08/01	535,128,954	
해외혼합형	2005/06/17	401,996,215	
코스피항셍형	2011/08/24	277,235,286	
브이캡그로스형	2009/09/24	250,273,449	
기후변화주식형	2008/10/09	57,682,998	
동남아시아형	2011/11/15	41,652,151	
해외혼합시니어론형	2013/12/06	23,228,534	

1개월 간 계속하여
설정원본이 50억 미만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근거규정]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

소규모 공시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입니다.

라이나생명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현황

이 자료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(수시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.

[소규모펀드 현황] 2022년 12월말 기준

펀드명	설정일	설정원본	사유
주식형	2008/09/22	3,989,394,912	
인덱스	2008/09/22	2,588,676,759	
애그리비즈니스	2007/07/25	2,254,752,607	
글로벌이머징형	2008/02/29	2,138,161,546	
미국주식형	2013/12/17	2,099,514,527	
혼합안정형	2004/10/12	2,075,655,930	
아시아50	2007/07/25	1,994,629,293	
밸류고배당주식형	2013/11/04	1,800,379,137	
유럽주식형	2007/07/25	1,229,891,914	
이머징커머디티형	2008/10/09	888,637,580	
코스피원자재형	2011/08/22	778,590,174	
삼성그룹주식형	2011/08/01	541,244,112	
해외혼합형	2005/06/17	403,742,000	
코스피항셍형	2011/08/24	276,291,701	
브이캡그로스형	2009/09/24	249,607,028	
기후변화주식형	2008/10/09	57,659,957	
동남아시아형	2011/11/15	32,089,644	
해외혼합시니어론형	2013/12/06	22,669,017	

1개월 간 계속하여
설정원본이 50억 미만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근거규정]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

소규모 공시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입니다.